

상장폐지 제도 개선 관련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안내

(’25.7.9, 코스닥 상장제도팀)

1 개요

□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25.1.21)』를 통해 발표된 제도 개선 방안 추진을 위하여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등에 관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

- ① 상장폐지 요건 강화 관련 :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단계적 상향,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 ②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관련 : 실질심사 2심제로 축소

2 상장폐지 요건 강화

① 시가총액 요건 강화 (관리종목 지정 후 형식적 상장폐지)

○ 시가총액 기준 상향(최종 300억원)은 '26.1.1.부터 시작하여 '28.1.1.까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

- 적용 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고, 시가총액 기준만 상향

* 30일 연속으로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중에 '10일 연속 기준 이상', '30일 기준 이상'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적용기간	시가총액 기준
2025년 12월 31일까지	40억원(종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50억원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00억원
2028년 1월 1일 이후	300억원

○ 시총 미달 일수 산정 중 연도가 변경되어 기준이 상향되는 경우, 기준 상향 전후 각 해당연도의 기준에 미달된 일수를 합산(부칙 §4③)

* 예: '26.12.31.까지 10일 연속 시총 150억원 미만 및 '27.1.1.부터 20일 연속 시총 200억원 미만 → 관리종목 지정(30일 연속 시총 미달)

② 매출액 요건 강화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매출액 요건 상향(최종 100억원)은 시가총액보다 1년 늦은 '27.1.1.부터 시행하며,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판단

감사보고서 제출시점	매출액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	30억원(종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0억원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75억원
2029년 1월 1일 이후	100억원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6사업연도('26.1.1~'26.12.31)의 매출액이 '27.3월에 제출된 감사보고서로 확인되므로, 위 표상 감사보고서 제출시점인 '27.3월에 적용되는 매출액 기준인 50억원을 적용하여 판단
- (결산기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25.10.1~'26.9.30인 9월 결산법인의 경우 '26년 중 제출*한 경우 30억원을 적용받으나, '27년에 지연 제출한 경우 50억원을 적용받게 됨
 -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은 '26.12.29.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 '27.1.1.부터 최근 사업연도 일평균 시총 6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출액 관련 관리종목 지정·실질심사를 면제
 - ※ '27년부터 제약·바이오 기업 대상 시총 4천억원 관리종목 지정 면제 제도는 폐지
- 기준 상향 기간 중 매출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해제 또는 실질심사 사유 발생 여부는 관리종목 지정 당시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부칙 §5③)
 - 관리종목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지정 당시 기준은 충족하나 당해 연도 기준 미달시 기존 관리종목 지정 해제 및 신규지정*(부칙 §5④)
 - * 예. '27.3월 매출액(5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된 법인이 '28.3월 매출액 70억원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당시 기준 충족으로 관리종목 해제 / '28.3월 기준(75억원) 미달로 관리종목 재지정
 - 관리종목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지정 당시 기준 미충족시 실질심사
 - 다만, 매출액 미달 여부와 상관 없이 최근 사업연도 일평균 시총 6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질심사하지 않고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
 - * 예. '27.3월 매출액(5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된 법인이 '28.3월 매출액 40억원인 경우: 실질심사. 단, '27년(최근 사업연도) 일평균 시총이 600억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해제

3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 1년차 감사인 의견 미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2년차에 감사 의견 미달 또는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
 - * 금융위 승인 등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기한이 연장되도록 세칙에 반영
- 신설된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 등 사유”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즉시 상장폐지 사유이며, 1년차 감사의견 미달에 따른 개선기간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심위 심의·의결 없이 상장폐지(규정 §55⑤)
- 예외적으로 ①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에 따른 (2년차)감사의견 미달이고, ②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을 받은 상태이며, ③감사의견 변경이 가능하다는 감사인 의견서(서식은 세칙에 마련)를 5일 이내 제출한 경우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여 상장폐지를 유예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심위 심의를 거쳐 1년 이내 상장폐지 유예
 - * (예시)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경우
- 규정 개정 전 감사의견 미달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신뢰 보호 측면에서 개정 규정 시행일(25.7.10.) 전 발생한 감사의견 미달은 동 규정 적용시 1년차 감사의견 미달로 보지 않을 예정(부칙 §6)

3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 실질심사 심의단계 축소 (3심제 → 2심제)

- 심의주체가 동일한 2심과 3심을 합쳐 2심제로 축소하여 절차 효율화

현 행	개 선
기심위 → 시장위 → (이의신청시)시장위	기심위 → (이의신청시)시장위

- '25.7.10. 이후 최초로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치는 상장법인부터 적용